

“올바른 국정감사만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이한구 의원님

제 목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면담 요청

1.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매년 국비지원이 전무하거나,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속하는 자료에 대한 일부 의원의 개별적인 요구가 상당이 있어 일선 현장 행정에 충실해야할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작성 등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취지에 배치됨은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그릇된 관행의 타파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원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오니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면담가능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광역노조연합 국정감사 바로잡기 주요활동 연혁 1부. 끝.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대표



사무총장 이성운

국감본부장 박진서

부대표 윤주용

대표 최중훈

시행 광역연합 - 44

(2012. 8. 22)

접수

(2012.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중앙로1)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www.gpgu.com)

전화 033-249-3802

전송 033-249-4087

/ 공개

“올바른 국정감사만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박지원 의원님

제 목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면담 요청

1.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매년 국비지원이 전무하거나,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속하는 자료에 대한 일부 의원의 개별적인 요구가 상당이 있어 일선 현장 행정에 충실해야할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작성 등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취지에 배치됨은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그릇된 관행의 타파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원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오니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면담가능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광역노동조합 국정감사 바로잡기 주요활동 연혁 1부. 끝.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사무총장 이성운 국감본부장 박진서 부대표 윤주용 대표 최중훈
시행 광역연합 - 44 (2012. 8. 22) 접수 - (2012. .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중앙로1)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www.gpgu.com)
전화 033-249-3802 전송 033-249-4087 / 공개

광역연합의 국정감사 바로잡기 주요활동 연혁

- 2000년도 국정관련 국감제도 개선요구 활동 전개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 국감반대 성명발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북, 전남)
 - 공개사과요구 성명발표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 : 대구시의 건교위 국감시 건교위 원장이 공직협의 국감반대에 대한 비판 및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모독 발언관련
 -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소송 (헌법 제10조, 제37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와 권리, 지방자치권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권 침해) ⇒ 지방공무원은 단순히 사실적,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각하결정
- 2000년도 국정관련 국감제도 개선요구 활동 전개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 국회의장에게 국정감사 중지요구 공문발송 :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 각 상임위원장에게 국정감사 중지요구 공문발송 :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
 - 국감 종료 후 일부 방송사에서 국정감사 제도개선 관련 TV토론회 방영 (서울, 부산)
- 「국가와 자치사무의 구분 및 국감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용역(한국정치학회) : '02. 3.
- 「국정감사 개선 등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대토론회」 개최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 '02. 4. 17.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회 등 각계에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개선 공동건의 : '02. 8. 26.
- 전국 광역시·도공직협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전면거부 성명 발표 : '02. 8. 30.
- 전국 광역시·도공직협에서 각 시·도의회에 자치단체 국감에 대한 입장표명 건의 : '02. 9.
- 국회사무차장 방문 개선요구 (16개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 '02. 9.
- 경기도의회에서 국정감사 제도개선 결의안 채택 : '02. 9. 12.
- 박관용 국회의장 서울지검에 고발 (국감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혐의) : '02. 9. 13.
 - 이후 국회의장 특별지시로 「국정감사개선기획단」 설치 운영 : '02. 9.
- 국정감사 개선을 위한 백만서명운동 및 국정감사 원천봉쇄 결의 : '02. 9.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 “감사범위는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지방고유사무 제외) : '03. 2.
- 2003년 국정감사 공동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03. 8.
- 국정감사자료 요구 시 국가사무 감축 분위기 확산 : '03. 7.~ 11.

- 2004. ~ 2008 기간중 국정감사 16개 시도광역연합 공동대응 사항
 - 관련 상임위 및 국회의원 공문발송
 -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항의방문(행자위, 건교위, 환노위 등)
 - 국정감사 거부 성명서 발표 및 국정감사장 방문 협조 요구
- 16개 시도광역연합 국장감사 바로잡기 추진본부 발족 : '09. 7.
- 국회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 '09. 9.
 - 광역노조연합에서 제안한 지속된 논란사항 해소를 위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분류 매뉴얼 제작활용 건의안에 동의, 국회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함.
 - 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의 시정노력 추진 약속
- 참여연대와 국감 공동감시 협의 : '09. 9.
 - 국감관련 부분에 대한 지속적 공유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공조에 협의
-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 사무목록 책자 발간(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편집) : '10. 7.
- 국정감사자료 DB사이트 구축 운영 협의(행정안전위 양당 간사) : '11. 10.
- 전국광역연합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서울지검에 고발 : '11. 10. 17.

◀ 주요 활동 성과 ▶

- 언론을 중심으로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 관심도 제고
- 지방분권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국정감사 반대 분위기 확산
-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과 무용론 확산

〈국장감사 서류제출 요구관련 안내문〉

【붙임 9】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관련 안내문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시 지방자치단체공무원노조로부터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자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범위 :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조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2. 서류(자료)제출요구의 방법 :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요구서는 서류제출요구일 ~~의결~~전에 송달되어야 함)

※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면 안 됨.

※ 관련 법조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탁에 요구하고, 중앙·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청문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는 본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2012. 3. 5.

행 정 안 전 위 원 장